

영등포구의회  
제18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신홍식 의원 대표발의】



2014. 2.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76호로 2014년 2월 4일 신홍식 의원 외 4인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4년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에 자문 기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신설하고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함.

(안 제4조)

- 심의대상 범위를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으로 하고,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포함.
- 심의대상 중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구체화 함.

-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함(안 제11조)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08조, 제109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심의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신설하고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였음.
- 안 제11조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추가 신설하였음.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 본 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계약 제도를 구현하고 지방계약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3.8.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6]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